

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

금액 고시

[시행 2025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59호, 2025. 1. 1., 일부개정]



고용노동부(고용지원실업급여과), 044-202-7380

1.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04조의8제7항제2호에 따라 예술인의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발생한 1일 평균소득에서 제외하는 금액: 16,048원

2. 행정사항

가. 유효기간

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나. 이 고시는 노동시장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연도 중 변경될 수 있다.